# 정보보호 관련 법

# 정보보호 관련 법규

- 정보화 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 전자 서명법
- 전자거래 기본법
- 개인정보보호법

세계의 70% 이상의 해커가 학생이라고 한다. 해킹을 영리가 목적이 아닌 일종의 호기심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지만, 역시 범죄로서 똑같이 처벌받는다.



[그림] 잘못된 길을 걷는 해커의 종말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netan.go.kr)에서 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 정보통신과 관련된 가장 광범위한 법률임.
-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 등을 범죄로 규정함.
- 이를 어길 시에 3년~7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함.

### [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범죄 사항

순번	적용 법조	범죄 내용
1	제70조 제1항	사이버 명예 훼손(사실 유포)
2	제70조 제2항	사이버 명예 훼손(허위사실 유포)
3	제71조 제1호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4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5	제71조 제5호	이용자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
6	제71조 제9호	악성프로그램(바이러스) 유호
7	제71조 제10호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8	제71조 제11호	타인 정보 훼손 및 타인 비밀 침해·도용·누설
9	제7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침입
10	제72조 제1항 제5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11	제72조 제1항 제2호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12	제73조 제1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
13	제73조 제2호	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14	제73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청소년에게 전송
15	제74조 제1항 제1호	인증기관 인증표시 무단 표시· 판매·진열
16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 문언/음향/영상 등의 배포·판매·전시
17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공포불안을 야기시키는 말・음향 등의 반복 행위)
18	제74조 제1항 제4호	스팸메일 수신거부 회피 관련 기술조치 행위
19	제74조 제1항 제5호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판매·유통·정보 전송에 이용
20	제74조 제1항 제6호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의 개발과 보급 등 이용촉진과 함께 통신망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한 법률
- 시책내용
  - ✓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 ✓ 정보통신망 표준화
  - ✓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 ✓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 처리, 보관,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보급
  - ✓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 ✓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 그 밖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나 주요 통신사와 같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법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의 주요 범죄 사항

순번	적용 법조	범죄 내용
1	제 28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교란·마비·파괴
2	제 29조	취약점 분석・평가업무 등의 종사자 비밀 누설

# 개인정보보호 8원칙 (OECD 가이드라인)

- 수집제한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정보정확성의 원칙: 처리 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 보장
- 목적 명확성의 원칙 : 처리 목적의 명확화
- 이용제한의 원칙 :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합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 안전보호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 처리 사항 공개
- 개인참가의 원칙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 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 개인정보보호 원칙 비교

OECD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1. 수집제한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2. 정보의 질 확보의 원칙 ~~~	<b>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 안전성 - 최신성 보장</b> (법 제3조, 제18조)
3. 목적 명확화 원칙	<b>처리목적의 명확화</b> (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4. 이용제한의 원칙 ***********	<b>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b> (법 제3조, 제18조)
5. 안전성 확보 원칙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법 제3조, 제4조)
6. 개인 참가의 원칙	<b>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b> (법 제3조, 제30조)
7. 공개의 원칙 ***********************************	<b>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b> (법 제3조, 제35조, 제36조)
8. 책임의 원칙	<b>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 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b> (법 제3조, 제29조)

###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한 법
- 2012년에 시행되었으며, 각 규정에 따라 3년~10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1억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범죄 사항

순번	적용 법조	범죄 내용
1	제22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	제23조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및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
3	제31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
4	제24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5	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미조치
6	제24조의 2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7	제25조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실 미공개
8	제26조 제1항	영업양도 등 미통지
9	제26조 제3항	영업양수자 등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0	제27조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미지정
11	제27조의 2	개인정보 취급 방침 미공개
12	제28조 제1항 제1호, 제6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
13	제28조 제1항 제2호~제5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14	제28조의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 침해, 누설
15	제29조	개인정보 미파기
16	제30조	이용자의 동의 철회, 열람, 정정 요구 미조치
17	제30조 제5항	개인정보 오류 정정 요청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
18	제30조 제6항	이용자의 동의 철회, 열람, 정정 요구를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게 함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2011.3.30)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하는 일반법

- 그동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 체계
- 법제정이후 공공기관, 사업자, 비영리단체, 개인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규율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mark>본원칙 정립</mark>

-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로 상호간 개인정보 교류 증대가 예상되며, 전세계적 국제통상 관련 프라이버시 라운드(Privacy Round) 대두
- 수집단계, 이용 · 제공 단계, 폐기단계 등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명시

# 정보주체의 권리 및 피해구제 강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청권 보장
- 개인정보유출통지,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등 피해구제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추진 경과

### 법 제정 취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 배경

-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번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 증가
- '11년 한 해 동안, 신세계몰 390만건,
   현대캐피탈 175만건, 한국엡손 35만건, SK컴즈
   3,500만건, 넥슨 1,320만건 등 침해사고 발생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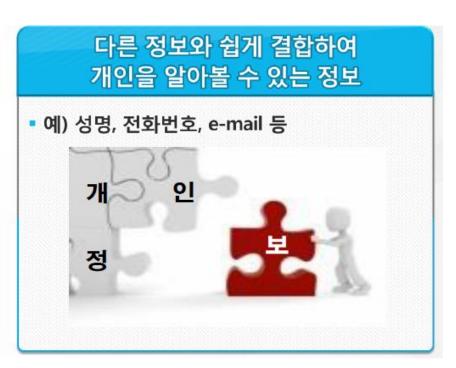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1.9.30)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13.8.6 개정, '14.8.7 시행)
-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14.3.24 개정, '16.1.1 시행)
-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 기능강화('15.7.24 개정, '16.7.25 시행)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6.3.2 의결)

#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제 3	총 칙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등
제 <b>4</b>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제 <b>5</b>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 · 절차,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단체소송의 대상, 소송허가신청 및 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제8장	보칙	적용제외, 금지행위, 비밀유지, 침해시실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 <b>9</b> 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부칙 : 시행일, 다른 법률의 폐지,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 개인정보의 정의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예) 주민번호, 영상정보, 음성 등 주민등목장 중보관(및 배원) 159515-1-49751 일당 HARMINES 대본교육



성명, 전화번호, 주소와 같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함.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법률 조항	법률내용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2.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및 동의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 업싱 수집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요금정산, 다른 법률에 규정

### ■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

법률 조항	법률내용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 병력, 기타 사회활동 경력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개인정보수집금지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집허용	이용자 동의, 다른 법률에 허용된 경우
서비스거부	이용자가 최소한 개인정보외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거부 안됨.

■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법률 조항	법률내용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느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 할 수 없다 1. 제23조3에 다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법률 조항	법률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24조의 2 개인정보의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동의 등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취급 위탁

법률 조항	법률내용
제 25조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음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법률 조항	법률내용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3작에게 제공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위 법률에 명시한 법률을 지 켜야 한다. 제 3자에게 제공시에도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아야한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법률 조항	법률내용
제27조 3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개인정보누출등의 통지, 신고	<ol> <li>수출등이 발생한 시점</li> <li>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li> <li>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li> <li>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li> </ol>

■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법률 조항	법률내용	
제 30조의 2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통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ㅎ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하지 아니 하다.	

■ 손해배상 및 법정 손해배상 청구

법률 조항	법률내용	
제32조 손해배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2조의 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 ■ 접근통제

고시조항	고시내용	
제4조 접근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한다. 최소 5년간 보관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는 접근을 제한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하여야 한다.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비밀번호 유효기간은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고시조항	고시내용		
제5조 접속기록의	개인정보치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위,변조 방지	시스템의 이상유무의 확인등을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		

### ■ 개인정보 암호화

고시조항	고시내용		
제6조 개인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바이오정보		

■ 악성프로그램 방지

고시조항	고시내용	
제7조 악성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방지	상태로 유지	

■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 조치

고시조항	고시내용	
제10조 개인정보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출력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표시제한 보호조치	위해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박XX)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비르크림	71 = 11 O	
법률조항	법률내용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장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개인정보법에 추가/ 망법엔 이항목이 없음)	

### ■ 통신비밀 보호법

-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1993년에 처음 제정됨.
- 다음의 범죄 사실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고 있음.

### [표] '통신비밀 보호법'의 주요 범죄 사항

순번	적용 법조	범죄 내용
1	제 16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 감청 및 비공개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2	제16조 제1항 제2호	지득한 통신 및 대화내용 공개・누설
3	제16조 제2항 제2호	통신제한조치 집행 등 관여 공무원의 비밀 공개 누설
4	제16조 제3항	통신제한조치 집행 등 관여 통신기관 직원 비밀 공개 누설
5	제16조 제4항	사인의 통신제한조치 취득내용의 외부 공개 및 누설

### ■ 저작권법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제정됨.
- 범죄 사실에 따라 3년~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표] '통신비밀 보호법'의 주요 범죄 사항

순번	적용 법조	범죄 내용
1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의 복제・전송・배포 등
2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명예 훼손
3	제136조 제2항 제3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복제・배포・전송으로 침해
4	제136조 제2항 제5・6호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변경 등과 같은 침해 행위
5	제 137조 제6호	허위 저작권 주장 , 복제 · 전송 중단 요구로 ISP 업무방해